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정(법률 제10419호, 2010. 12. 27. 공포, 2012. 7. 1. 시행)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,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,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및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3년 4월 5일

국무총리 정 흥 원

국무위원 황 교 안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1727호

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있으나,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, 교통사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그 근거규정이 미비한바,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3년 4월 5일

국무총리 정 흥 원

국무위원 황 교 안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1728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3조 중 “1年内에”를 “6개월 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·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,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3년 4월 5일

국무총리 정 흥 원

국무위원 황 교 안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1729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제224조(고소의 제한)에도”를 “제224조(고소의 제한)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266조에도”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252조제1항”을 “제252조제1항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29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군형법」 제92조의8의 죄(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)

제31조제4항 중 “제57조(재판의 공개)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제57조(재판의 공개)제2항·제3항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67조제2항·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